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후 계약 체결하실 고객들만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제한기간이 3년 적용되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하며, 전매제한 또한 당초의 전매제한기간(1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5061
---	---------	------------------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0.14.)로부터 3년 단, 1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1회 전매 허용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19.(금)	2025.11.11.(화)	2025.11.17.(월)	2025.11.20.(목)	2025.11.21.(금)	2025.11.22.(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 청약자격을 확인하시어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무순위 청약 가능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일 주택(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일 주택(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1.(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2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43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1.17(월)	2025.11.20(목)	2025.11.21(금)	2025.11.22(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 2025.10.14.(화)로부터 3년간 적용되나, 2025.10.15.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당초의 전매제한기간(1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8층 4개동 중 2개동, 총 254세대 중 일반분양 242세대 중 잔여세대 115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25	01	084.8422A	84A	19	101	501, 601, 701, 801, 1001, 1101, 1401, 1701, 2801	
					102	501, 701, 1201, 1301, 1401, 1601, 1801, 2201, 2401, 2501	
	02	084.7662B	84B	22	101	502, 602, 1002, 1102, 1202, 1302, 1902, 2102, 2302, 2602	
					1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102, 1402, 1602, 2602, 2702	
	03	084.6747C	84C	24	101	303, 403, 503, 603, 803, 903, 1003, 1803, 2203, 2303	
					102	303, 403, 503, 603, 703, 803, 1003, 1303, 1503, 1603, 1703, 1803, 2203, 2303	
	04	084.7184D	84D	25	101	304, 504, 604, 804, 904, 1004, 1304, 1404, 1804, 2004, 2604, 2804	
					102	304, 404, 504, 604, 704, 804, 904, 1204, 1304, 1804, 2004, 2104, 2604	
	05	084.9194E	84E	25	101	305, 405, 505, 605, 705, 805, 1005, 1105, 1205, 1405, 1505, 2605	
					102	305, 505, 705, 805, 905, 1005, 1105, 1305, 1505, 1605, 1805, 2105, 2405	
	합 계				11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 대 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차 (30일 이내)	2026-04-27	2026-12-28	2027-10-27	2028-09-27	2029-02-27	2029-08-27	입주지정일
84A	19	101,102동 1호	5~10F	7	652,190,000	678,810,000	1,331,000,000	50,000,000	8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399,300,000
			11~15F	5	659,050,000	685,950,000	1,345,000,000	50,000,000	8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403,500,000
			16~20F	3	665,420,000	692,580,000	1,358,000,000	50,000,000	8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407,400,000
			21~25F	3	672,280,000	699,720,000	1,372,000,000	50,000,000	8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411,600,000
			26~28F	1	675,220,000	702,780,000	1,378,000,000	50,000,000	8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413,400,000
84B	22	101동 2호	5-10F	3	648,270,000	674,730,000	1,323,000,000	50,000,000	8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396,900,000
			11-15F	3	654,640,000	681,360,000	1,336,000,000	50,000,000	8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400,800,000
			16-20F	1	661,500,000	688,500,000	1,350,000,000	50,000,000	8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405,000,000
			21-25F	2	667,870,000	695,130,000	1,363,000,000	50,000,000	8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408,900,000
			26-28F	1	671,300,000	698,700,000	1,370,000,000	50,000,000	8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411,000,000
		102동 2호	3F	1	638,470,000	664,530,000	1,303,000,000	50,000,000	8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390,900,000
			4F	1	644,840,000	671,160,000	1,316,000,000	50,000,000	8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394,800,000
			5-10F	5	651,700,000	678,300,000	1,330,000,000	50,000,000	8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399,000,000
			11-15F	2	658,070,000	684,930,000	1,343,000,000	50,000,000	8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402,900,000
			16-20F	1	664,440,000	691,560,000	1,356,000,000	50,000,000	8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406,800,000
84C	24	101동 3호	26-28F	2	679,630,000	707,370,000	1,387,000,000	50,000,000	8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416,100,000
			3F	1	637,000,000	663,000,000	1,300,000,000	50,000,000	8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4F	1	643,370,000	669,630,000	1,313,000,000	50,000,000	8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393,900,000
			5-10F	5	650,230,000	676,770,000	1,327,000,000	50,000,000	82,70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398,100,000
			16-20F	1	663,460,000	690,540,000	1,354,000,000	50,000,000	8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406,200,000
		102동 3호	21-25F	2	669,830,000	697,170,000	1,367,000,000	50,000,000	8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410,100,000
			3F	1	640,430,000	666,570,000	1,307,000,000	50,000,000	80,700,000	130,700,000	130,700,000	130,700,000	130,700,000	130,700,000	130,700,000	392,100,000
			4F	1	646,800,000	673,200,000	1,320,000,000	50,000,000	8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396,000,000
			5-10F	5	653,660,000	680,340,000	1,334,000,000	50,000,000	8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400,200,000
			11-15F	2	660,030,000	686,970,000	1,347,000,000	50,000,000	8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404,100,000
84D	25	101,102동 4호	16-20F	3	666,400,000	693,600,000	1,360,000,000	50,000,000	8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408,000,000
			21-25F	2	673,260,000	700,740,000	1,374,000,000	50,000,000	8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412,200,000
			3F	2	643,370,000	669,630,000	1,313,000,000	50,000,000	8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393,900,000
			4F	1	649,740,000	676,260,000	1,326,000,000	50,000,000	8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397,800,000
			5-10F	10	656,600,000	683,400,000	1,340,000,000	50,000,000	8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402,000,000
			11-15F	4	662,970,000	690,030,000	1,353,000,000	50,000,000	8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405,900,000
			16-20F	4	669,830,000	697,170,000	1,367,000,000	50,000,000	8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410,100,000
84E	25	101,102동 5호	21-25F	1	676,200,000	703,800,000	1,380,000,000	50,000,000	8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414,000,000
			26-28F	3	679,630,000	707,370,000	1,387,000,000	50,000,000	8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416,100,000
			3F	2	636,510,000	662,490,000	1,299,000,000	50,000,000	7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389,700,000
			4F	1	643,370,000	669,630,000	1,313,000,000	50,000,000	8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393,900,000
			5-10F	10	649,740,000	676,260,000	1,326,000,000	50,000,000	8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397,800,000

			11-15F	7	656,600,000	683,400,000	1,340,000,000	50,000,000	8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402,000,000
			16-20F	2	662,970,000	690,030,000	1,353,000,000	50,000,000	8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405,900,000
			21-25F	2	669,340,000	696,660,000	1,366,000,000	50,000,000	86,600,000	136,600,000	136,600,000	136,600,000	136,600,000	136,600,000	409,800,000
			26-28F	1	672,770,000	700,230,000	1,373,000,000	50,000,000	8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411,90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C	20,000,000	2,000,000	18,000,000
84D	20,000,000	2,000,000	18,000,000
84E	20,000,000	2,000,000	18,000,000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804-82930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발코니 확장대금		우리은행	1005-904-82460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점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우리은행 1005-804-829302,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20.(목) ~ 2025.11.29.(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1.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 2025.11.21.(금) 10:00~16:00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1.)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는 건본주택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 방문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제출 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1.1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주)아주)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가사항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서명)하여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 **2025.11.22.(토) 10:00~16:00**

- 서류 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체결일인 2025.11.22.(토)에 서류 검수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과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구비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1.1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2통 제출(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주)아주)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시 (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 - 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2통 제출(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발코니 확장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주)아주)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추가 선택품목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 시 유의 사항 및 추가 선택품목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

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 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해당 세대
	발코니 확장 계약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추가선택품목 계약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 중 12세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신혼Ⅱ)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임대주택(신혼Ⅱ)은 일반분양 이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주관하여 동호추첨에 따라 매입대상 세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판매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해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본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09.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야외주민운동공간, 경로당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3~7층 : 2.3m 이상 (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2층 : 2.7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2층 램프 출입구 : 2.7m 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 호	주식회사 아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425606	110111-6740008	110111-2003236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서초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견본주택 및 안내사항 :

구분	약도	안내사항
내용		■ 현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번지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문의 : 1551-5061 ■ 홈페이지 : https://www.sangbong-ipark.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025.06.30.)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